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 국

미 법무부, 월드콤 사와 스프린트 사의 합병에 대해 중지청구

합병이 금지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6월 27일 법무부는 월드콤 사와 스프린트 사의 합병은 국내에 있어 많은 중요한 장거리통신서비스의 경쟁에 타격을 주고, 결과적으로 많은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높은 가격을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당해 합병을 중지토록 제소하였다. 국내에 있어서 3대 장거리통신회사 가운데 2개사에 의한 합병인 당해 계획은 법무부가 반대한 합병 중 최대의 합병이다.

Janet Reno 법무장관은 "당해 합병은 25년 전에 법무부가 AT&T 사에 의한 장거리통신사업의 독점에 도전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쟁에 의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의존해 온 수많은 서비스

- 장거리전화서비스,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 및 인터넷 접속서비스 - 의 경쟁을 보호하는 것은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일이다" 라고 언급했다.

Joel I. Klein 반트러스트국장은 "미국의 소비자, 사업자 및 인터넷 이용자는 통신 및 인터넷 시장의 경쟁적인 시장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받게 된다. 만약 월드콤 사가 스프린트 사와 합병한다면 대기업, 소기업 및 수많은 개인소비자는 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보다 낮은 질의 서비스와 보다 가치가 적은 기술혁신의 제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무기한의 합병중지명령을 구하고자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가정용 장거리전화시장 및 기타 장거리통신시장에 있어서 월드콤 사와 스프린트 사는 서로가 AT&T 사에 대한 유일한 실질적인 경쟁자이다. 월드콤 사와 스프린트 사는 공히, 수익의 고객에 대한 계좌를 취급하기 위해 국내 및 국외에서 광섬유네트워크 및 발전된 고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의 고객에 대해 다양한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많은 노동인력을 고용, 훈련하고, 지구상에 널리 알려진 신뢰받는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수년간에 걸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소장에 따르면, 당해 합병계획은 미국에 있어서 많은 가장 중요한 장거리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하기 때문에 독점금지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국내에 있어서의 가정용 장거리 서비스 : 이 시장에서 월드콤 사의 가정용전화선의 점유율은 약 19%이며, 스프린트사의 점유율은 약 8%이다. 「3대 회사」인 월드콤, 스프린트 및 AT&T 사의 점유율을 합하면 약 80%에 달한다.

- 전국에 있어서의 최고 수준(top-level)의 접속성을 공급하는 인터넷 중추 서비스 : 이 시장에서 사업자는 인터넷중추접속을 인터넷서비스의 제공자 및 인터넷 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월드콤 사는 가장 큰 인터넷중추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모든 인터넷 거래의 약 37%를 점유하고 있다. 스프린트사는 두번째로 큰 중추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인터넷 거래의 약 16%를 점유하고 있다.

- 미국과 50개 이상의 외국간의 국제장거리서비스 : 이 시장에서 월드콤 사와 스프린트 사의 합계 점유율은 최소한 30%이며, 3대 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최소한 80%이다.

• 미국과 50개 이상의 외국간의 국제장거리서비스 : 이 시장에서 사업자는 미국에 소재하는 특정의 고객에게 특정의 상대방과의 통신을 위해 배타적으로 미국과 타국을 연결하는 전용 회선을 제공하고 있다.

• 국내에 있어 초대기업을 위한 고객네트워크 서비스 : 초대기업은 복잡한 장거리통신을 필요로 하고 통상 이러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주문받아 통합 구매한다. 이러한 주문은 단순히 장거리통신서비스(예, 전화의 음성서비스) 및 가장 발전되고 복잡한 서비스(예, 수백의 지점을 접속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엄격한 보증부 관리 데이터 네트워크와 더욱 향상된 무료음성 서비스)를 포함한다. 3대 회사는 고객 네트워크서비스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는 이러한 개별 주문을 받는 서비스에 대하여 단지 극소수의 계약만을 체결하고 있다.

Klein 국장은 "다른 사업자는 매우 적은 규모로 시장에 진입해 있다. 그러나 월드콤사와 스프린트사간 및 이양사와 AT&T사간의 경쟁에 의해 생기는 효과에 필적할만한 유익한 효과를, 경쟁에 의해서 일으킬만한 사업자는 없다"라고 언급했다.

월드콤사(舊 MCI 월드콤사)는 1999년에 370억 달러의 수입을 얻었고, 미시시피주의 Clifton에 본사를 두고 있는 Georgia주 법인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장거리통신사업자의 하나이며, 65개 국가에 2,200만 이상의 가족 및 기업의 고객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프린트사는 1999년에 약 170

억 달러의 수입을 얻었으며, 캔사스주 Westwood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이다. 국내에서 가장 큰 장거리통신사업자의 하나이며, 1,700만 이상의 가정 및 기업의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드콤사 및 스프린트사는 유럽위원회와 브라질 경쟁당국으로부터의 승인의 연방통신위원회 및 국내의 수많은 주공익사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 합병을 행할 수 없다. 7월 13일, 월드콤사 및 스프린트사는 당해 합병계획을 단념하는 취지를 공식 발표하였다.

■ 2000. 6. 27. 미 법무부 발표

FTC, 하인즈 사의 Milnot 사 취득 저지할 듯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7월 7일, H. J. 하인즈사가 동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Beech-Nut 유아식 제조업체인 Milnot Holding Corp.를 취득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이것이 경쟁을 억압할 것이라며 이의 저지를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이를 제소하도록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피츠버그에 소재하고 있는 하인즈사는 회사명을 딴 케첩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성명을 통하여 당해 취득계획이 "미국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유아식 제품 범주에서 가격인하, 출시품목 수의 증대

및 더욱 혁신적인 경쟁으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FTC는 유아식 부문 미국 제2위 업체인 하인즈사와 제3위인 Beech-Nut사의 결합은 이미 집중도가 높은 유아식 시장에서 복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당해 계약은 거버사와 하인즈/Beech-Nut사 두개 기업으로 하여금 미국 유아식 시장의 98%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트러스트법에 위반될 것이다"라고 FTC 경쟁국장인 Richard G. Parker는 성명을 통해 발표하였다.

FTC의 이러한 움직임은 식품산업에서의 통합의 물결 속에서 나온 것인데, 이러한 통합에는 203억 달러 규모인 대형 소비자용품 제조업체 유니레버사의 베스트푸드사 취득과 149억 달러 규모인 필립모리스사의 나비스코사 취득이 포함된다. 하인즈사의 사장이자 최고경영자인 William Johnson은 당해 기업은 이러한 추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여 왔다.

샬로먼 스미스 바니사의 식품 부문 분석가인 Jaine Mehring은 FTC의 조치에 대해 놀랐다고 하고 그러나 하인즈사의 강경한 어조의 성명은 동기업이 오랜 기간 법정에서 다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였다고 하였다.

Mehring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하인즈사가 식품 부문에서의 경쟁 제고를 위해 두 기업을 결합하려는 것을 정부가 저지하려 하더니 믿을 수 없다. 이는 충격적이다."라고 말하였다. Mehring은 FTC의 움직임이 동

위원회가 현재 심사중인 다른 기업결합 중 일부를 저지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인즈사와 Milnot 사 - 시카고에 소재한 Madison Dearborn Capital Partners LP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는 전부 합쳐 미국 유아식 시장의 28%를 차지하게 되며, 이는 노바티스 사 소속인 거버사의 70% 시장점유율과 비교된다고 FTC는 밝혔다.

하인즈사는 이외에도 Ore-Ida 냉동감자, Star-Kist 참치 및 수백 종의 식료품을 제조하는데, 세인트루이스에 소재한 Milnot 사와의 기업결합은 거버사에 대한 강력한 경쟁업체를 탄생시키게 되어 2개의 소규모 경쟁업체보다 소비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하인즈사와 Beech-Nut 사의 결합은 경쟁촉진적이며, 유아식 부문에 활기를 불어넣을 혁신의 증대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Milnot 사의 최고경영자인 Scott Meader는 말하였다.

하인즈사의 미국 내 유아식 연간 매출액은 약 1억 달러이며, 전세계에서의 유아식 매출액은 10억 달러 이상이다.

하인즈사의 한 이사는 당해 기업이 기업결합 인가를 위해 FTC와 협상중인지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였으며, 동 기업은 성명을 통해 법정에서 당해 기업결합을 옹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00. 7. 7, The New York Times

미국-멕시코 반트러스트 협력협정 체결

미국 FTC와 법무부는 7월 11일 미국 및 멕시코 양국에 의해서 반트러스트법의 집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두 국가간 협력협정에 대한 서명이 양국 대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발표하였다.

「경쟁법의 적용에 관한 미국 합중국 정부와 멕시코 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은 멕시코시에서 서명하였다. 동 서명은 무역산업성에서 하였으며 조엘 크라인 법무부 트러스트국장과 로버트 비토후스키 FTC 위원장이 미국을 대표하고 하미니오 프랑코 멘도사 무역산업장관이 멕시코를 대표하여 서명을 하였다. 멕시코는 미국과 같은 협정을 맺는 여덟번째의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비토후스키 위원장은 서명을 한 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본 협정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비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반트러스트법 집행에 관한 최후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두 국가간의 중요한 경제관계의 계속적 발전을 보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협정은 1998년 파나마시에서 개최된 최초의 미주경쟁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반트러스트의 협력에 관하여 미국이 앞으로도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본 협정의 목적은 양국의 경쟁법 적용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회피하고

각 체약국의 반트러스트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각 체약국의 경쟁당국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미국은 같은 협정을 EU,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일본 및 브라질과 체결하였다.

1995년에 체결된 미국과 캐나다 간의 협정을 모방한 본 협정은 각 체결국에 대하여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집행활동에 대하여 상대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체결국은 상대방의 집행활동을 지원하거나 비밀이 아닌 정보의 공유하는 등 협력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본 협정은 관련된 사안의 심사활동의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정여부의 결정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본 협정은 「적극예양」 즉 상대국 관할 내에서 행한 자국의 주요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반경쟁적 행위의 조사에 당해 상대국이 하여야 할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요청은 피요청국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요청을 한 국가의 집행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본 협정은 「전통적」 내지 「소극」예양 즉 양 체약국의 심사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주의깊은 고려를 하여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협정은 양 체결국이 당해 협정에 의한 비밀로 전달된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고 제3자에 의한 정보공개 요청에 저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협정은 각 체결국의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

고 법률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FTC는 5대0의 표결로 당해 협정을 승인하였다.

■ 2000. 7. 11, FTC 발표

**WorldCom/Sprint
기업결합, 미·EU의
반대로 취소**

WorldCom사와 Sprint사는 7월 14일 1,290억 달러 규모의 기업결합을 공식적으로 취소하였는데, 미국 법무부와 유럽연합으로부터의 법적 이의제기가 당해 기업결합의 취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였다. 이들 두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맨해튼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역사상 최대의 통신업계 기업결합이 되었을 계약 체결 사실을 공표한 지 10개월이 지난 이 날, WorldCom사와 Sprint사는 형식적인 보도자료만을 내놓고 갈라섰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식적 발표는 또 다른 대형 기업결합 계약의 파고를 예고하고 있다. 독일 통신업체인 Deutsche Telekom사는 미국 내 주요 통신업체의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print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여 왔다. France Telecom사, British Telecom사 및 BellSouth Corp.도 Sprint사 취득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그러나 7월 13일의 인터뷰에서 Sprint사의 최고경영

자인 William T. Esrey는 Sprint사는 장래에는 독립적 회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다른 기업결합을 통해 성장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함으로써 이같은 추측을 불식시키려 하였다. 그는 "Sprint사는 매각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WorldCom사와 기업결합 협정을 체결한 것은 우리에게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이는 모두 허튼소리이다. 우리는 WorldCom사와의 기업결합이 더 나은 성과를 올리기 위한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협정을 체결한 것이었다."라고 말하였다. 물론 Ersey 회장은 다른 기업이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내놓는다면 Sprint사는 이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Ersey 회장은 Sprint사는 인가가 나기 어려운 또다른 기업결합 협정 체결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 행보가 이미 미 의회로부터 우려를 불러일으킨 Deutsche Telekom사에게는 불길한 전조가 될 수 있다. "규제당국과의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 것이 나운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힘들고 실망스러운 경험이였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WorldCom-Sprint 기업결합 협정이 공식적으로 취소되기 이전에도 윌스트리트에서 이번 초대형 기업결합의 실패가 어떠한 새로운 기업결합을 낳을 것인가에 관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유럽에서 발간된 한 보고서에서는 British Telecom사가 이미 WorldCom사에 접근하여 World-

Com사의 현 시가총액의 대략 2배를 지불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WorldCom사는 인수가격의 인상을 요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사가 인용한 산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이는 "완전한 헛소문"이며 British Telecom사도 당해 소문을 부인하였다.

기업결합된 상태로든 아니든 이들 두 기업은 두 최고경영자가 강조하였듯이 확실히 상당한 자산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WorldCom사는 미국 제2위의 장거리 전화회사이며 최대의 전세계 인터넷망을 보유하고 있다. Sprint사는 미국 3위의 장거리 전화회사이며 급속히 성장하는 미국 내 무선통신사업부문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부문 때문에 WorldCom사는 Sprint사 인수에 착수한 것이었다. Ersey 회장은 "우리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왔다. 우리는 매년 20%씩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20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기업들 중에서 이러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업체는 흔치 않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게 위안을 주는 바로 그 특성 때문에 결국 이들의 기업결합은 실패로 끝난 것이었다. 미국 법무부는 당해 기업결합이 장거리 전화사업 경쟁에 대한 용인불가능한 타격이라고 하여 이의 저지에 나섰다. 유럽연합도 이 기업결합이 WorldCom사에 인터넷 통신에 대한 지나친 지배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이를 저지하기로 하였다.

이들 기업은 통신 분야에서 신규진입자가 넘쳐나고 있으며 기술이 급속

히 변화하고 있어 이들의 기업결합이 경쟁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은 당해 기업결합은 지역 내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무선통신 기술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Bell 계열 전화회사들과 경쟁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이 혜택을 입는 것으로 묘사하였었다. 그러나 규제당국은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 7월 13일, WorldCom 사의 최고경영자인 Bernard J. Ebbers는 처음으로 당해 기업결합에 대한 경고를 보냈던 연방통신위원회(FCC)의 William E. Kennard와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I. Klein을 특히 지목하여 독설을 내뿜었다. "이 기업결합의 이익은 명백하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Ebbers 회장은 말하였다. "당해 기업결합에 대한 반대는 궁극적으로 혁신 및 선택을 감소시키고, 가정 고객들, 특히 미국 전원지역의 고객들에게 전화서비스 가격을 인상시키게 될 Kennard-Klein 정책 목록에 추가될 것이다."

Klein 국장은 당해 기업결합 취소 소식을 환영하였다. "당해 기업결합은 가격 인상, 서비스 품질의 저하 및 혁신의 감소를 야기하였을 것이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미국 소비자들 및 업체들은 경쟁의 이익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2000. 7. 14, Los Angeles Times

**일본 다이젤 화학공업
임원 가격카르텔로
기소 5,300만불 벌금
지불에 동의**

일본의 대화학회사인 다이젤 화학공업(주)의 임원 3인이 식품방부제에 대한 국제적 카르텔에 관여하였다 하여 연방대법원에 의해 기소되었다고 법무부가 발표하였다. 다이젤은 상기 카르텔에 참가하였다 하여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동 카르텔에서 동 사가 한 역할에 대하여 5,300만불의 벌금 지불에 동의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대법원은 1979년부터 1996년까지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판매되는 솔베트 가격의 결정 및 판매량 할당을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타사업자 및 개인 공모자와 모의를 하였다 하여 다이젤 사의 담당임원이 기소되었는데 임원 3인 모두가 일본국민이다. 이와 동시에 동 경에 소재한 다이젤 사도 상기 기소와는 별도로 솔베트의 가격 카르텔 및 판매량 할당에 참가하였다 하여 기소되었다. 다이젤 사는 현재 진행중인 동 조사에 협력하기로 동의하였다.

상기 카르텔에 의해서 약 10억불이 미국 내 거래에서 이루어졌다. 약 2억불 상당의 솔빈산카리움과 솔빈산에 포함될 솔베트가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다. 솔베트는 주로 치즈 등의 일상식품, 과자, 기타 가공식품 중에서 수분이나 당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사용되는 화학 방부제이다.

크라인 반트러스트국장은 "높은 지위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임원이 금일 기소된 것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를 기만하여 국제 카르텔에 참가하는 개인도 법률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본 건 정식기소 및 약식기소에 따르면 피고 및 공모자의 죄상은 다음과 같다.

- 솔베트의 가격을 협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가격인상에 합의하였다.

- 주요 솔베트 제조사간에 각 사가 판매하는 솔베트량을 할당하는데 합의하였다.

- 협정에 따라 가격을 공표하고 견적액을 제출했다.

- 협정한 가격과 판매량을 감시하고 준수하기 위한 회합에 참가하였다.

특히 3인의 다이젤 사 임원과 동 공모자가 미국 내에서 회합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격의 공표순이나 타이밍을 서로 다르게 하였으며 카르텔을 위한 회합이나 행위에 대한 증거를 은폐시키기로 하였다.

다이젤 사는 이스트만 케미컬 사, 웨키스트 사 일본합성에 이어 솔베트의 카르텔에 참가하였다 하여 기소된 네번째 회사이다. 다이젤에 대한 5,300만불의 벌금으로 이번 조사에서 부과한 벌금의 합계액은 1억 2,000억불을 넘는 것이 된다.

다이젤 및 3인의 개인 피고는 서면법 제1조 위반에 의해서 기소되었는데 동 조는 기업에 대하여 최고 1,000만불의 벌금을, 개인에 대해서

는 최고 3년간의 금고형과 35만불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과 개인 양자에 대한 벌금의 최고액은 범죄에 의해서 얻은 이익의 2배 또는 범죄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2배의 금액이 법률에서 정한 벌금의 최고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정도 금액까지 인상할 수 있다.

이번의 기소는 반트러스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및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하는 FBI에 의해서 조사된 결과이다. 본 건은 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형사사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FTC에서 법무부로 이관된 것이다.

■ 2000. 7. 25. 법무부 발표

미 항소법원, 반트러스트법 위반 관련 Toys 'R' Us 사에 패소판결

미 연방항소법원은 8월 1일, 미국 최대의 장난감 소매업체인 Toys 'R' Us 사가 경쟁업체들의 가격을 인상시키고 경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위법하게 행위하였다고 판결하였다. 3인의 판사로 구성된 시카고 소재의 재판부의 이번 전원일치 판결은 1996년에 최초로 이의를 제기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주요한 승리였다.

미국 제7순회항소법원은 FTC의 결정 및 동 위원회가 주장한 바 장난감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가장 인기있는 제품들을 할인매장에 제공하지 않도록 유독한 관행을 중지하라는 동 위

원회의 명령에 대한 Toys 'R' Us 사의 이의제기를 기각하였다. "우리는 FTC의 결정이 기록에 관한 상당한 증거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구제명령은 FTC법에 의해 동 위원회에 부여된 광범한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결론을 내린다"라고 Diane Wood 판사는 판결을 통해 언급하였다. 뉴저지 주 Paramus에 소재한 당해 회사로부터는 논평을 얻을 수 없었다.

FTC 위원장인 Robert Pitofsky는 인터넷 소매활동에 더욱 광범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되는 반트러스트법의 중요한 확증으로서 당해 판결을 환영하였다. "나는 이 판결이 대중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몇몇 원칙들을 복원하여 준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는 로이터 사와의 인터뷰에서 말하였다. "이 사건은 할인매장에 관련되어 있지만 장래에 대한 시사점은 전통적인 유통업체들이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자신들의 확고한 지위에 도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다"라고 Pitofsky는 말하였다.

FTC는 Toys 'R' Us 사가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요 장난감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이른바 몇몇 장난감을 합친 "알뜰포장"이나 단종된 제품만을 Costco나 Pace와 같은 할인매장에 판매하도록 강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가격 및 제품의 비교가 불가능해졌고 경쟁업체로서의 이들 할인매장의 유효성이 감소되었다고 FTC는 주장하였다.

FTC 행정법 판사인 James Timony가 당해 사건을 심리하였으

며 1997년 판결을 통해 Toys 'R' Us 사에 대한 조치를 지지하였다. FTC 위원들은 1998년 4-0의 표결로 Timony 판사의 의견을 지지하였는데, 이는 당해 회사에 의한 항소로 이어졌다.

항소법원은 Toys 'R' Us 사가 자신은 장난감 공급업체들의 가격할인클럽과의 시장협정을 변경하도록 강제할 만큼의 시장력을 견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Toys 'R' Us 사는 "장난감 소매업에서 대기업"으로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장난감 5개당 1개는 동 회사가 판매하고 있다고 하였다.

Hasbro Inc.와 같은 대형 장난감 제조업체들도 만일 Toys 'R' Us 사의 마케팅 조건을 거부할 경우 대체적인 소매업체를 찾을 수 없었다. "경쟁업체들간의 행위의 조정을 통해 가격의 폭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어도 1940년 이후부터 위법한 것이었다"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 2000. 8. 1, The New York Times

Allied Waste Inc., 미 법무부의 반대로 기업결합 계획 변경

Allied Waste Industries Inc.는 미국 정부의 반트러스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시시피 주와 오하이오주에 소재한 Waste Management Inc.의 자산을 3,660만 달러로 취득

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였다고 미국 법무부가 8월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Allied 사는 미조리 주 캔사스시티에 소재한 Waste Management 사의 폐기물 수거 및 처리자산을 4,260만 달러로 취득하려는 계획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법무부는 원래대로의 기업결합 계획이 미시시피 주의 Clarksdale, Greenville 및 Vicksburg, 그리고 오하이오 주의 Findlay와 Lima 지역에서 상당한 경쟁업체를 제거할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반대하였었다. 이들 지역 각각에서 Allied 사 및 Waste Management 사는 상업적 폐기물 수거 및 지역 내 고체폐기물 처리를 제공하는 두개의 또는 소수의 중요한 업체이다.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I. Klein은 "이러한 해결은 이들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낮은 가격 및 더 나은 서비스라는 경쟁의 이익의 보존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정부는 당해 기업결합 중 캔사스시티와 관련된 부분에는 경쟁상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애리조나 주 Scottsdale에 본사를 두고 있는 Allied 사는 미국 제2위의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체로서 1999년 매출액은 60억 달러였다.

휴스턴에 소재하고 있는 Waste Management 사는 미국 최대의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체로서 1999년 매출액은 134억 달러였다.

■ 2000. 8. 1, The New York Times

미국 하도급업체, 입찰조작으로 기소돼

보스턴 시내의 다리 건설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프랑스의 한 하도급업체와 임원이 입찰조작을 공모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3일 연방대배심원은 이들을 기소하였다. 프랑스 기업인 Freyssinet International et Cie 사의 전 최고경영자인 Jean Pierre Cagnat는 1996년 미국에서 건설중인 3개 교량에 영향을 미치는 입찰순서 구도에 합의할 목적으로 다른 교량 케이블 회사들과 회합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것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당해 합의는 Big Dig으로 알려진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주요 부분으로서 Charles River Bridge로 알려진 보스턴 다리에 사용될 케이블 공급을 위해 어느 업체가 선정될 것인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관련된 또다른 교량은 켄터키 주 및 오하이오 주에 걸친 Maysville Bridge와 조지아 주의 Sidney Lanier Bridge이다. 이 다리는 보스턴에서 현재 반쯤 건설되어 있는데, 이미 시가지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고 있다. 완성되고 나면 10차선 규모 의 이 다리는 세계 최대 폭의 현수교가 될 것이다.

Freyssinet 사와 체결된 케이블 하도급계약은 440만 달러의 규모라고 매서추세츠주 유료도로공사의 대변인인 Bob Bliss는 말하였다. 이 다리는 내년도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

비용은 9,200만 달러가 들 것이다.

Bliss 대변인은 "우리는 비용의 과다청구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만일 있었다면 과다청구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사의 품질 문제는 결코 아니다. 우리는 이미 지불된 대가에 상응하는 공사결과를 얻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법무부가 현수교 산업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인 반트러스트 조사의 일부로서 제기된 네번째 사건이며 Freyssinet 사를 상대로 한 것으로는 두번째이다. 1999년 9월, 동 기업은 입찰조작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7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법무부 대변인인 Gina Talamona는 밝혔다. 검찰은 프랑스 거주자인 Cagnat에 대하여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만일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그는 최고 35만 달러의 벌금과 최고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Freyssinet 사의 대변인은 8월 3일 연락이 닿지 않아 논평을 얻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이 공사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당해 프랑스 기업에 하도급을 주었던 주계약업체인 Atkinson-Kiewit Construction 사의 대변인인 Jerry Pfeffer는 말하였다. "Charles River Bridge는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으며 우리에게 공급된 자재는 우리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Big Dig 프로젝트는 93번 주간(州間, interstates)도로가 보스턴 시내 지하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1991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도로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는데, 추정 총공사비는 140억 달러에 이른다.

■ 2000. 8. 3, The New York Times

E U

유럽위원회, 쿠베르나사와 알슈토클 사의 합작투자심사시 정보제공을 게을리 한 미쓰비시중공업에 제재금

유럽위원회는 작년의 쿠베르나사와 알슈토클 사의 합작투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게을리한 것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에 제재금을 부과할 것을 결정하였다. 합병규칙 절차에 따라 신고 당사자 이외의 기업에 제재금을 과한 것은 유럽위원회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다. 이행강제금의 지불을 이러한 절차에 따라 기업에 부과한 것도 처음있는 일이다.

쿠베르나사와 알슈토클 사에 의한 화학필프 합작투자심사시 미쓰비시는 합병심사에 있어서 당해 계획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유럽위원회를 지원할 것을 제3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는 합병규칙 제11(5)에 근거하여 정보제공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유럽위원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럽위원회가 엄

려를 표명한 시장의 하나인 재생보일러의 세계시장에서 자사의 사업에 관한 불완전한 정보 이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유럽위원회는 요구한 정보는 쿠베르나사와 알슈토클 사의 사업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므로 미쓰비시의 행위가 유럽법에 중대한 위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요구한 정보를 미쓰비시가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유럽위원회는 재생보일러 시장의 평가를 일부 추정에 의해서 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

합병규칙 제14(1)(C)조에 근거하여 유럽위원회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유럽위원회의 정보제공 요구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제11조에 의한 결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1,000 유로에서 50,000 유로 사이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또한 합병규칙 제15(1)조에 근거하여 유럽위원회는 정보를 정식으로 요구한 날, 본 건에서는 1999년 7월 10일부터 유럽위원회가 합병심사를 마친 1999년 9월 8일까지, 하루 지체시에 25,000 유로까지를 가산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쿠베르나사와 알슈토클 사는 유럽위원회의 반대에 직면하여 합병사업 신고를 철회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이 때문에 미쓰비시에 2종류의 제재금을 부과할 것을 결정하였다. 하나는 합병규칙 제14조(1)(C)에 근거,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50,000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한 것이고, 두번째

는 총액 900,000유로의 이행강제금 부과이다.

이 결정을 채택함에 있어 유럽위원회는 합병당사자와 유럽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것을 요구한 경쟁자, 양쪽으로부터 정당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유럽 합병규제규칙을 집행코자 하는 그들의 결의를 강조하였다. 부정확 또는 오해를 발생시키는 정보, 또는 불충분한 정보 또는 정보의 거부는 유럽위원회가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써 유럽의 기업 및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 2000. 7. 12, 유럽위원회 발표

유럽위원회, Astra/Novartis 기업결합 인가할 듯

유럽위원회는 AstraZeneca사와 Novartis사의 농화학 사업부문간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이들 기업이 작물보호 제품 일부를 처분하기로 합의하자, 7월 26일 이를 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의 반트러스트 당국인 동 위원회는 이들 기업이 자신들의 작물 보호 사업부문을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기업인 Syngenta사를 설립하려는 계획에 대해 지난 3월 조사를 개시하였었다. EU 관리들은 새로이 탄생하는 기업이 곡물, 사탕무 보호를 위한 살균제 및 옥수수 보호용 제초제 시장에서 지배적이 될 것을 우려하였다. 지난 달, AstraZeneca사는 규제당국

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옥수수 보호용 제초제 사업부문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Novartis 사는 스위스의 공장을 포함하여 Flint 살균제 사업부문을 매각할 것이라고 하였다.

분석가들은 Flint 및 Astra-Zeneca 사의 살균제 브랜드인 Amistar를 결합함으로써 Syngenta 사는 지배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여 왔다.

이들 두 기업은 추가적 처분에 대한 논평을 회피하였으나, 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이 보다 소규모인 살충제 및 종자처리 사업부문 일부의 매각을 강제받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들 사업부문의 인수가능업체로서는 독일 그룹인 바스프와 미국 기업들인 American Home Products 사 및 다우 케미컬 사가 포함된다. 이러한 처분이 있는 후에도 Syngenta 사는 여전히 세계 최대의 작물 보호제품 회사이며 3위의 종자 생산업체로서, 매출액은 거의 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새로이 탄생하는 Syngenta 사는 유럽 및 미국 규제당국이 당해 기업결합을 인가하는대로 스위스 주식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런던, 뉴욕 및 스톡홀름 주식시장에도 2차적으로 상장될 것이다. 분석가들은 Novartis 사가 61%의 지분을 갖고 잔여지분은 AstraZeneca 사가 지배하게 될 Syngenta 사의 시가총액이 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해 기업결합은 1999년 12월에 공표되었다. AstraZeneca 사와 Novartis 사의 주주들은 10월 11일

당해 계획에 대해 투표할 것이다.

■ 2000. 7. 23, Financial Times

유럽위원회, 항공권 컴퓨터예약시스템에 대한 차별취급을 시정

유럽위원회는 에어 프랑스사가 미국의 CRS(컴퓨터예약시스템) SABLE에 대해 차별취급을 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사가 이미 일부 소유하고 있는 CRS아마데우스와 동일 조건을 SABLE에 제공하고 또한 다른 CRS에도 같은 조건으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행동기준에 동의함으로써 에어 프랑스사에 대한 심사중료를 결정하였다. 성공리에 끝난 심사는 EU와 미국, 양국 협력협정에 따라 미국 법무부의 요청에 의해 개시된 최초의 사건이다.

SABLE와 아마데우스는 항공권 판매와 관련 서비스를 용이하게 하는 컴퓨터예약시스템이다. SABLE는 최근까지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자회사이며, 아마데우스는 에어 프랑스, 독일의 루프트한자, 스페인의 이베리아, 미국의 콘티넨탈항공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심사의 단서는 미국 법무부(DOJ)에 대한 신고였고, 이 내용은 아마데우스에 접속하고 있는 많은 항공회사(에어 프랑스, 루프트한자, 이베리아, SAS 등)가 각각의 시장에 있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신고의 중점은 항공회사가 아마데우스에 제공하는 것과 같은, 포괄적으로 시의적절한 비행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온라인 예약확인과 같은 가능한 기술을 SABLE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에 관련된 것이다.

EU와 미국의 독점금지협력협정에 의해 결정한 「적극예양」을 처음으로 이행한다는 뜻에서 미 법무부는 유럽위원회에 EU 경쟁법하에 의해서 상기 신고를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적극 예양에 의해 미국 경쟁당국은 유럽위원회에 대해 유럽에서 행하고 있으며 신고된 반경쟁적 행위를 조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역으로 유럽위원회가 미 법무부에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예비적인 조사 후, 유럽위원회는 1999년 3월에 에어 프랑스에 대한 정식심사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SABLE는 에어 프랑스와 「행동기준」에 합의하기에 이르렀고 이 기준은 쌍무적인 행동을 내용으로, CRS와 항공회사간에 평등한 대우를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위원회의 염려했던 것에 대응한 것이었다. 기준은 또한 정기적인 정보교환과 기술개발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에 의한 심사에는 루프트한자, 이베리아, SAS에 의한 차별취급의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SABLE는 루프트한자 및 SAS와 동일한 내용의 「행동기준」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준은 또한 여행대리점에 의한 남용된 예약관행이라는 위협에 대해 협력하여 대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항공회사는

기타의 다른 어떤 CRS와도 동등의 조건으로 거래를 행할 의도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한 요약은 경쟁총국의 운수담당팀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

본 건에 관해, 마리오 몬테 유럽위원회 경쟁정책담당위원은 "이번 심사는 적극예양에 따른 요구에 의한 최초의 결과였다. 만족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기쁘다. 이것은 EU와 미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대서양의 양측에서 경쟁법 집행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라고 코멘트 하였다.

■ 2000. 7. 25, 유럽위원회 발표

유럽위원회, 독일 출판사 사무실 압수수색

유럽위원회는 8월 2일, 인터넷으로 독일 소비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외국 업체들에게 서적의 배달을 중지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주요 독일 출판사 및 도매업체 사무실을 수색하였다. 유럽위원회 경쟁담당위원인 마리오 몬티의 대변인은 당해 수색이 뮌헨의 베텔스만 사, 베를린의 Aufbau-Verlag 사, 슈투트가르트에 소재한 도매업체인 KNO 사 및 K&V 사,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의 독일서적출판협회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번 조치는 인터넷 사업을 통해 독일의 서적이격유지체제를 회피하려는 시도의 선봉에 선 오스트리아 서적 소매업체인 Libro 사와 독일 출판업

체들과의 치열한 분쟁을 가열시켰다. 영국을 포함한 다른 유럽국가들은 서적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협정을 폐지하였으나 프랑스는 이와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Libro 사는 인터넷을 통해 정가보다 최고 20% 저렴한 가격으로 서적을 판매하여 왔다. 이에 대응하여 독일 출판업체들은 당해 오스트리아 출판사에 대해 물량 공급을 중단하였는데, 이는 지난달 Libro 사의 유럽위원회에의 이의제기를 촉발하였다.

독일은 서적 재판매가격유지협정이 독일의 문학적·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몬티 위원은 고정된 서적 가격은 해외로부터 소비자로서의 서적 직접판매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8월 2일의 사전예고 없는 수색은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협력을 얻어 실시되었는데, 부분적으로는 독일 출판업체들이 Libro 사를 보이콧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증거를 찾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색은 또한 독일 최대의 출판사인 베텔스만 사와 Libro 사간에 체결되고 7월 28일 공표된 계약이 자유경쟁에 대한 위법한 제한이 되는지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당해 계약이 있고 난 후 Libro 사는 독일 출판사 및 도매업체들로부터의 서적 공급 재개의 대가로 독일 고객들에 대한 인터넷 서적 판매시의 할인을 중지하였다. 유럽위원회 조사관들은 또한 비엔나에 소재한 Libro 사의 본사도 방문하였다.

■ 2000. 8. 2, Financial Times

유럽위원회,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대한 반트러스트 조사 폭 확대

유럽위원회는 8월 3일,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서버 소프트웨어의 경쟁업체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PC 운영체제에서의 자사의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다루기 위한 반트러스트 조사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조사 확대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에게는 또다른 타격인데, 동 기업은 올해 미국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강제로 분할될 수도 있다.

지난 2월에 동 위원회는 최신 윈도우 2000과 연관된 서버 시장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지배적 지위의 남용 주장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만일 위원회가 시애틀에 소재한 당해 기업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하게 되면, 동 기업의 전세계 수입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 경쟁담당위원인 마리오 몬티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차별적 라이선싱 및 윈도우 운영체제에 관한 필수적 정보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EU 반트러스트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한 미국 서버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의 이의제기가 있는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이의성명서"를 발송하였다고 하였다. 선 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95% 점유율을 갖고 있으므로 자사의 운영체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사 제품이 아닌 서버용 소프트웨어와 호

환될 수 있게 할 연계 내지 인터페이스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버는 네트워크 컴퓨팅의 기초를 형성하며 동 위원회에 따르면 “정보기술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전세계 시장의 발달에서 전략적 부문을 구성한다.”

동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이른바 “아군-적군” 구도 하에서 경쟁업체들간의 차별적 라이선싱 정책을 펼쳤다고 하였다.

동 위원회의 조사는 미국 법무부의 조사와는 다른 것인데,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넷스케이프 사 및 선사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통해 자사의 PC 운영체제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보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2개월 내에 이에 답하여야 하고 자사 관련 사건에 대한 구두심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사절차는 1개월 연장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8월 3일 선사의 이의제기는 “기술적 영업비밀에 접근하고자 하는 동 기업의 욕망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였다.

파리에 소재한 마이크로소프트 유럽법인의 법률 및 기업문제 담당 이사인 John Frank는 동 기업은 유럽위원회가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제공할 정보를 검토하면 “긍정적인 해결”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자사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는 “여러 곳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에의 접근은 “서점,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회의에서 즉각 이용 가능하다”고 하였다.

■ 2000. 8. 3, Financial Times

유로화 지역 은행들, 환전수수료와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에 직면

유럽위원회는 8월 4일 밤, 독일 및 네덜란드의 30개 은행에 대하여 유로화 지역에서의 환전 수수료를 정하는 반트러스트 규칙을 위반한 대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작년도에 단일통화의 출범 직후 은행들이 유로화 지역의 통화 환전시의 수수료를 고정시키기로 담합하였다는 주장이 담긴 소비자들로부터의 다수의 이의제기에 뒤인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8월 4일, 이들 은행은 1999년 1월 1일 유로화가 출범하면서부터 유로화 지역 통화의 양국간 환율이 고정되어 환차손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강조하였다. 동 위원회는 독일의 17개 은행, 네덜란드의 13개 은행, 그리고 2개의 네덜란드 은행연합회가 환전수수료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거나 또는 환전수수료의 인하를 통제하기로 합의하였을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는 후 이들에게 “이의성명서”를 발송하였다고 하였다.

동 위원회의 조치는 위원회가 벨기에, 핀란드, 포르투갈 및 아일랜드의 110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에 이와 유사한 통지를 송부한 지 한 달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이들 은행은 11월말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동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논평하여야 한다.

관련된 은행들은 양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은행들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이의성명서를 독일의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은행들 모두에게 발송하였는데, 이에는 코메르츠뱅크, 드레스드너 은행, Bayerische Hypo und Vereinsbank와 Westdeutsche Landesbank가 포함된다. 그러나 도이체뱅크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은행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네덜란드 은행들 중에는 ABN 암로 은행, ING, Fortis 및 Postbank가 포함된다. 동 위원회는 Fortis의 자회사인 GWK 은행도 독일 및 네덜란드에서의 가격고정협정 양쪽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동 위원회는 작년 2월 조사관들이 유로화 지역의 은행지점들을 수색한 이후 이들 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만일 EU가 최종적으로 이들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결정을 내릴 경우 이들 은행은 최고 전세계 수입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물론 실제상 EU의 과징금은 수입의 1%를 초과한 적이 없었다.

경쟁담당위원인 마리오 몬티는 관련 은행들에 대한 당해 조사는 “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하였다. 그는 “은행들은 환전수수료의 수준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수수료를 고정하기로 담합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경쟁규칙의 위반이며 그 결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 엄하게 처벌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2000. 8. 4, Financial Times